

**투자위험등급:**  
**1 등급**  
**[매우높은위험]**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하나 UBS 분할매매 목표전환형 증권투자신탁 2 호[주식혼합]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 UBS 분할매매 목표전환형 증권투자신탁 2 호[주식혼합]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하나 UBS 분할매매 목표전환형 증권투자신탁 2 호[주식혼합]
2. 집합투자기구 분류 : 투자신탁, 증권, 개방형, 단위형
3. 집합투자업자 명칭 :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주식회사
4. 판매회사 : 판매회사 영업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http://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www.ubs-hana.com](http://www.ubs-hana.com)) 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작성 기준일 : 2013년 11월 1일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한 날 : **2013년 11월 25일**
7.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모집(매출) 총액]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 조좌]
8.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2012년 3월 28일 ~ 2012년 4월 6일
9.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http://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kofia.or.kr](http://kofia.or.kr)  
서면문서 : 금융투자협회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참고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집합 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 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 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 1. 투자목적

가.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나. 이 투자신탁의 종류 A 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가 목표기준가(1,100 원 수준)에 도달하여 채권형으로 전환되는 채권형 전환일 이후에는 국내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신탁계약종료일이 최초설정일로부터 1 년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까지 운용된 후에 청산됩니다.

주 1) 누적기준가격이라 함은 선취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펀드결산이 있을 경우 각기 발생한 이익분배율(세전 기준)을 반영한 기준가를 의미합니다.

주 2) 종류 A 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를 산출할 수 없을 경우(종류 A 수익증권의 전액 환매 등)에는 종류 C 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로 대체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가. 투자전략

#### (1) 기본전략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최초설정일에 신탁재산의 60% 수준을 국내주식에 각 종목당 동일비중 수준으로 투자한 후, 변동성을 기준으로 시스템 자동분할 매매를 통하여 매매이익을 누적하는 전략을 실행합니다.
- 이후 목표수익률에 도달시 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수익을 확정하고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이자소득을 추구하며 전환일로부터 6 개월 후에 상환됩니다.

#### (2) 세부운용계획

##### A. 주식운용전략

**하방경직성과 높은 변동성을 지닌 우량주를 시스템적으로 자동분할 매매하여 매매이익 누적**

**하방 경직성을 보유한 우량주를 전제로 한 종목 선정**

- 우량주 위주의 블루칩 바스켓 펀드의 포트폴리오 편입 종목 내에서 종목 선정

**우량주 중에서도 가격 변동성이 큰 30 종목을 선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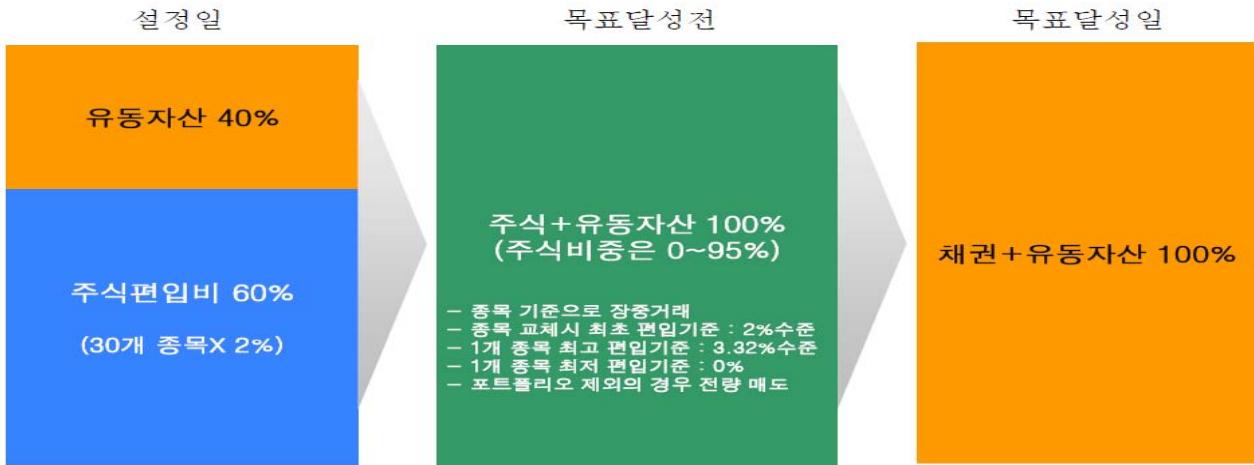
- 우량주 중에서도 과거 변동성(과거 90일 변동성)이 큰 30 종목을 선별

**우량주의 매매이익을 누적시켜 목표 달성을 가능성 향상**

- 변동성이 커던 우량주를 대상으로 분할 매매
- 우량주의 매매 차익을 누적시킴으로써 목표 달성을 가능성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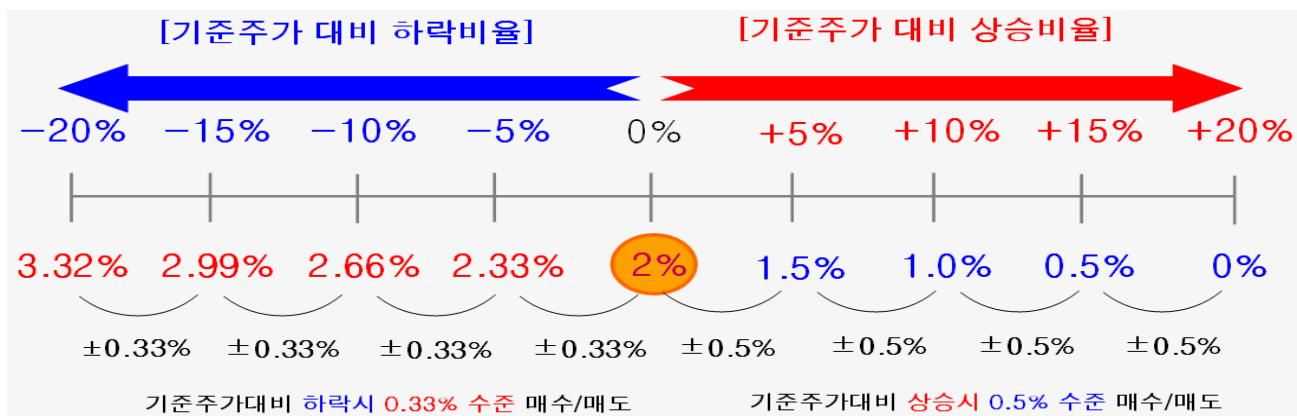
**시스템 펀드 운용의 풍부한 Know-how 활용**

- 2004년 5월 펀드 출시 후 누적 설정고 2.7조원 수준 (2010년 12월말 기준)
- 펀드 유형별로 운용(채권혼합형, 주식혼합형, 액티브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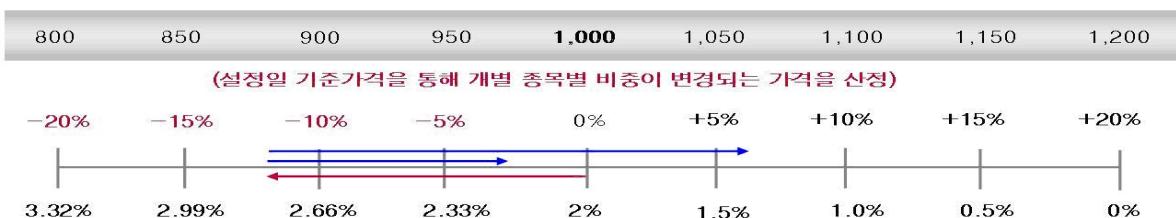
\*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이 전략을 실행하기에 필요한 적정 규모가 안될 경우, 상기의 전략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운용계획(예시)



#### 분할매매 종목 비중 변경 예시

\* 가정 : 펀드 설정일 XX물산 주식평가액은 1,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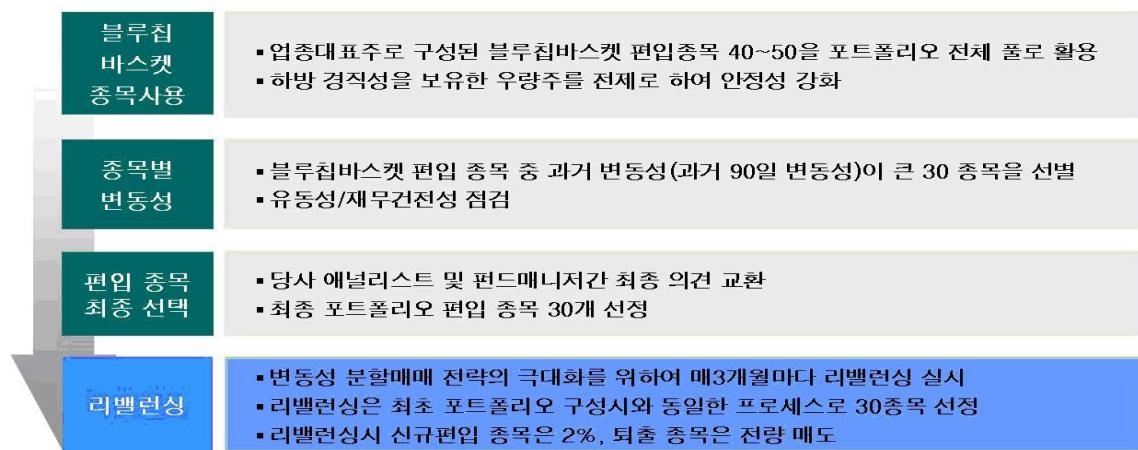
- 만약 XX물산의 주가가 최초 설정일 이후, -12%를 기록했다면...
  - : 최초기준가격대비 -5%인 950원에 비중을 2.33%로 늘리고, -10%인 900원에 비중을 2.66%로 늘리게 됨.
- 만약 XX물산의 주가가 8%를 회복하여 972원으로 회복하게 된다면...
  - : 950원에 해당하는 2.33%로 비중을 다시 축소하게 됨.
- 만약 XX물산의 주가가 18%를 회복하여 1,062원으로 상승하게 된다면...
  - : 기준가격인 1,000원까지는 비중을 0.33%씩 축소하게 되고, 1,050원이 되는 시점에 최종 비중은 1.5%로 조정

\*본 예시는 단순 설명만을 목적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이 전략을 실행하기에 필요한 적정 규모가 안될 경우, 상기의 전략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포트폴리오 구성

### 분할매매 목표전환 포트폴리오 구성 프로세스



#### B. 채권형으로 전환

- ①이 투자신탁 종류 A 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가 전환목표수익인 1,100 원 수준에 도달시 국내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함
  - ②채권형으로의 전환일은 종류 A 수익증권이 목표수익에 도달한 날로부터 제 6 영업일입니다.
  - ③채권형으로의 전환일로부터 6 개월 후에 상환됩니다. 다만, 신탁계약종료일이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까지 운용된 후에 청산됩니다.
- \* 주식형에서 채권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장상황(목표수익에 도달한 날로부터 채권형으로의 전환일까지의 주식시장 변동)에 따라 추가적인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종류 A 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를 산출할 수 없을 경우(종류 A 수익증권의 전액 환매 등)에는 종류 C 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로 대체합니다.

(3) 비교지수 : (KOSPI 수익률 X 60%) + (Call 금리 X 40%)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매월 및 주식시장이 하락할 경우 추가적으로 편입비를 높이는 전략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주식에의 투자비율이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되므로 (KOSPI 수익률 X 60%) + (Call 금리 X 40%)가 전체 투자기간 동안의 펀드 성과와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 나. 위험관리

-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 축소
  - 시스템에 의한 자동분할매매를 통해 매니저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 가능성 축소
  - Risk Control 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 다. 수익구조

본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주식)에 대부분을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 주요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을 상장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 상장주식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주식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위험	일반적으로 채권 등의 가격은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변동됩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의 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나,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무증권의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및 부 도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적격등급이상(A-)이상의 채권 등에 투자할 예정이나, 발행사의 신용평가 등급이 하락하거나, 부도 등의 신용사건(Credit Event)이 발생할 경우 채무증권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환금성이 제약되는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파생상품투자위 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채권형으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 는 추가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목표수익에 도달한 경우에 주식형에서 채권형으로 전환하는 투자신탁으로서 이 과정에서 시장상황(목표수익에 도달한 날로부터 채권형으로의 전환일까지의 주식시장 변동)에 따라 추가적인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유형

이 투자신탁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분할매매를 통해 주식에의 투자비율이 95% 까지 도달할 수 있어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거나, 위험자산에의 투자비중이 낮은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가격변동성이 큰 위험이 있으므로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매우 높은 위험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해당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식의 가치변동,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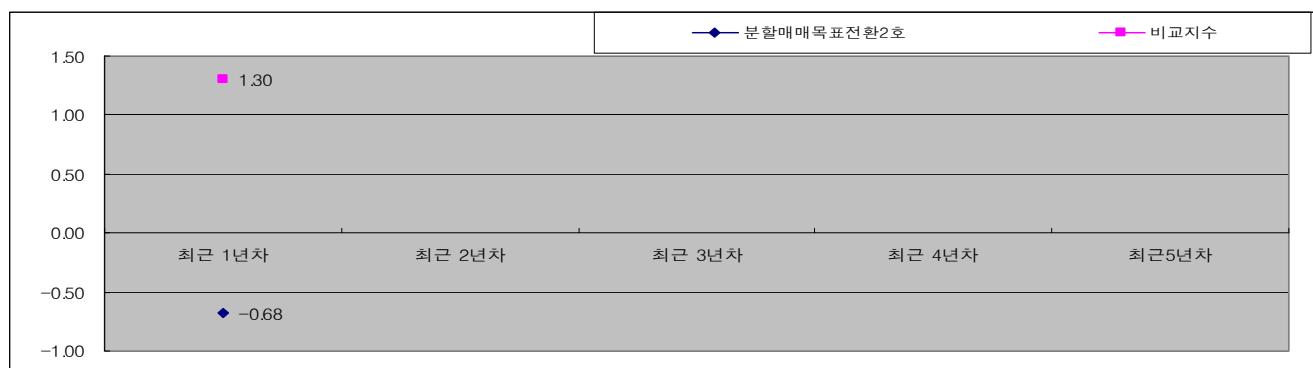
## 5. 운용전문인력(2013.11.1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운용 자산규모	
박소영	1983	대리	2 개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74 억 -	-카이스트 경영공학 석사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2.8 년 -현 하나유비에스 투자솔루션본부

주 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 2) 기준일 현재 동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없습니다.

## 6. 투자실적추이 (연도별 수익률 추이, 세전기준, 기준일: 2013년 10월 5일, 단위 : %)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2012/10/06~ 2013/10/05	2011/10/06~ 2012/10/05	2010/10/06~ 2011/10/05	2009/10/06~ 2010/10/05	2008/10/06~ 2009/10/05
분할매매목표전환2호	2012-04-06	-0.68				
비교지수	2012-04-06	1.30				
ClassA	2012-04-06	-0.50				
ClassC	2012-04-06	-0.89				

## II. 매입·환매관련 정보

### 1. 수수료 및 보수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종류A	종류A-E	종류C, C-E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 이내 <sup>주)</sup>	납입금액의 0.7% 이내 <sup>주)</sup>	-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
환매수수료	30 일 미만 : 이익금의 70% 30 일 이상 90 일 미만 : 이익금의 30% <b>채권형 전환일로부터 90 일 미만 : 이익금의 70%</b>			환매시

주1) 판매수수료는 판매회사가 납입금액의 1.0%(종류A) / 0.7%(종류A-E)이내에서 수수료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별 수수료율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될 예정입니다.

주2) 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규약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채권형으로 전환 이전>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종류 A	종류 A-E*	종류 C	종류 C-E*	
집합투자업자보수	0.600%	0.600%	0.600%	0.600%	3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600%	0.300%	1.000%	0.500%	
신탁업자보수	0.030%	0.030%	0.030%	0.030%	
일반사무관리보수	0.018%	0.018%	0.018%	0.018%	
보수합계	1.248%	0.948%	1.648%	1.148%	사유발생시
기타비용 <sup>주1)</sup>	0.008%	실비	0.008%	실비	
총보수 및 비용 <sup>주2)</sup>	1.257%	0.948%	1.648%	1.148%	사유발생시

\* 온라인 전용 클래스(A-E, C-E)의 판매회사 보수는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인하되며, 보수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류A-E : 1) 2012년 12월 31일 까지 : 0.42%  
2) 2013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 0.36%  
3) 2014년 1월 1일 이후 : 0.30%
- 종류C-E : 1) 2012년 12월 31일 까지 : 0.70%  
2) 2013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 0.60%  
3) 2014년 1월 1일 이후 : 0.50%

## <채권형으로 전환 이후>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종류 A	종류 A-E*	종류 C	종류 C-E*	
집합투자업자보수	0.25%	0.25%	0.25%	0.25%	3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35%	0.24%	0.45%	0.31%	
신탁업자보수	0.03%	0.03%	0.03%	0.03%	
일반사무관리보수	0.018%	0.018%	0.018%	0.018%	
기타비용 <sup>주1)</sup>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사유발생시
총보수 및 비용 <sup>주2)</sup>	0.648%	0.538%	0.748%	0.608%	
증권거래비용 <sup>주3)</sup>	실비	실비	실비	실비	사유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직전회계년도 2013.10.05 기준으로 최근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증권거래비용은 직전회계년도 2013.10.05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단, 2013년 8월 28일까지 발생분에 한함)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단위: 원)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구 분	1년후	3년후	5년후
종류A	226,607	499,129	799,585
종류A-E	166,464	374,103	603,026
종류C	168,898	532,450	933,267
종류C-E	117,655	370,906	650,116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상기의 예시표는 채권형으로 전환이 되지 않은 가정 하에 계산된 금액입니다.

## 2.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 가.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



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나.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다.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수익자인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당해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 가. 기준가격 산정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 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 <a href="http://www.ubs-hana.com">www.ubs-hana.com</a> ),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a href="http://www.kofia.or.kr">www.kofia.or.kr</a> )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 나. 매입 및 환매절차

### (1) 매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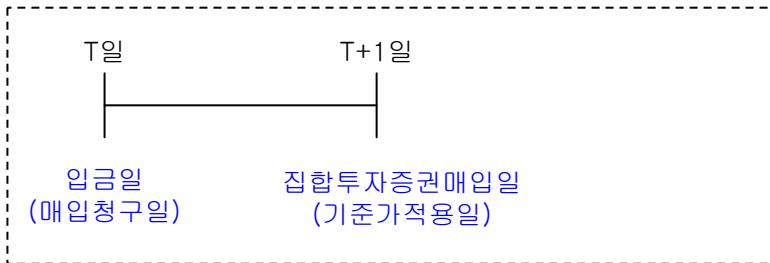
####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2)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 오후 3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 - 오후 3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 원으로 합니다.

- \* 이 투자신탁의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나 수익증권 매입시 영업일은 판매회사의 영업일로 합니다.
-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2) 환매

#### 1) 수익증권의 환매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 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 <채권형으로 전환>

- 1) 오후 3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

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 2) 오후 3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채권형으로 전환후>

- 1) 오후 5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3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 2) 오후 5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4. 전환절차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습니다.

### III. 요약 재무정보

요약재무정보		
항 목	제 2 기(반기)	제 1 기
	2013.10.05	2013.04.05
운용자산	620,091,836	739,858,310
유가증권	322,015,600	412,601,900
현금 및 예치금	118,076,236	14,256,410
기타 운용자산	180,000,000	313,000,000
기타자산	18,197,534	2,625,980
자산총계	638,289,370	742,484,290
기타부채	19,879,042	39,181,536
부채총계	19,879,042	39,181,536
원본	620,297,602	708,556,960
이익조정금	-1,887,274	-5,254,206
자본총계	618,410,328	703,302,754
운용수익	2,234,955	-5,179,152
이자수익	3,317,016	7,725,309
배당수익	261,000	3,525,794
매매/평가차익(손)	-1,347,588	-16,430,980
기타수익	4,527	725
운용비용	28,832	116,740
매매수수료	28,832	67,700
기타비용	0	49,040
당기순이익	2,206,123	-5,295,892
매매회전율	220	415

간이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고객 보관용)

집합투자기구(펀드)명칭 : 하나UBS 분할매매 목표전환형 증권투자신탁2호[주식혼합]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 서명 또는 (인)

1. 간이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받을 수 있는데 직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2. 판매회사는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 등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그 상품에 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이용하여 설명을 해야 하는데 설명을 받으셨는지요?
  3. 위의 절차에 따라 권유받은 이 상품이 귀하께 적합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7. 판매회사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할 경우 계열사 펀드임을 설명하고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하여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 받으셨나요?

위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한 판단을 하신 후에 최종 투자결정을 내리셔서 귀하께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으시는 경우가 없도록 한층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১০৩

(판매직원 성명: 서명) - (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

간이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판매회사 보관용)

◆ 집합투자기구(펀드)명칭 : 하나UBS 분할매매 목표전환형 증권투자신탁2호 [주식혼합]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 서명 또는 (인)

고객 확인 사항		고객기재사항
1. 간이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받을 수 있는데 직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듣고 받았음)
2. 직원으로부터 이 상품에 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이용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3. 이 상품이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적합함)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제공받고 들었음)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상품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7. 판매회사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할 경우 계열사 펀드임을 설명하고 유사한 성격의 다른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하여 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비계열사 펀드도 함께 권유 받으셨나요?		(들었고 권유받았음)

에

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

